

울산광역시 동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제1657호 2026. 3. 5.(목)

고 시

○ 도로명주소 고시 1

안 내	○ 동구 전자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(정기)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수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	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회 람	○ 동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동구 홈페이지(www.donggu.ulsan.kr) → 동구소식 → 고시/공고 → 동구공보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울산광역시 동구 편집 : 기획예산실(☎ 209-3047, 행정 3047)

울산광역시동구 고시 제2026 - 18호

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3월 5일

울산광역시 동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부여

연 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1	일산동 958-1번지	해수욕장10길 4	2009-10-07	2026-03-05	일산해수욕장이 위치한 지역 적 특성을 반영하며, 이 해수 욕장 블럭구간에서 열번째로 시작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해당 도로명을 부여함.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민원지적과(☎052-209-3843)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.